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77호 2015. 1. 19.(월)

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015-11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 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377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5 - 11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5. 1. 19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5 - 1호
2. 점용·사용 승인년월일 : 2015년 1월 15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기존 선착장 협소로 인한 유도선·선박 접안, 어로활동 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,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편익제공, 태풍시 어선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늑도동 557-1번지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174.7㎡(직접 : 112.5㎡, 간접 62.2㎡)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5년 1월 15일 ~ 2030년 1월 14일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건설과장)
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8. 점용·사용의 승인조건 : 붙임 참조

사 천 시 공 보

제377호(3)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5. 1. 19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5 - 2호
2. 점용·사용 승인년월일 : 2015년 1월 15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기존 선착장 협소로 인한 유도선·선박 접안, 어로활동 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,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편익제공, 태풍시 어선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마도동 79-2번지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330.6㎡(직접 : 145.0㎡, 간접 185.6㎡)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5년 1월 15일 ~ 2030년 1월 14일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건설과장)
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8. 점용·사용의 승인조건 : 붙임 참조

사 천 시 공 보

제377호(4)

승 인 조 건

1. 본 사업은 2014년도 신도 비법정도로 정비공사의 일환으로 기존선착장 협소로 인하여 유도선·선박 접안, 어로활동 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,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태풍 시 어선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코자 하는 건입니다.
2. 공사추진시 부유토사와 비점오염원 등이 해역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 및 어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함.
 - 매립토의 환경친화적인 공급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, 적치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함.
 - 공사시 발생하는 부유사의 해양유입은 영양염류의 증가와 투명도를 감소시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오탁방지막설치, 유류오염방제대책 등 부유사 저감대책을 강구시행
 - 토사의 해역유입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부유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유사가 증가 될 경우에는 공사 강도를 조절하여야 함
3. 공사시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로부터 오수가 발생되어 해양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.
4. 사업예정지의 인근해역에 어업권(마을어업 등)이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, 어업인의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한 후 민원발생에 대비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해야 함.
5. 또한, 기 협의조건 중 지속적 이행사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.
6.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『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』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,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(문화정보과)에 알려야 함.
7. 기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·허가 등을 득한 후 공사 등 사업 시행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.
8. 승인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, 본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의법 조치합니다.
9.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피 승인 자는 본 승인증을 수령 후,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동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승인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